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해설

〈전호에 이어〉



박 준 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이사관)

목 차

1. 공정거래제도의 배경 및 의의
2.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 가. 머리말
 -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성요건
 - 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 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
- 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외국의 입법 예
3.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 맺는 말

(6)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이며, 이러한 행위는 기업경쟁 강화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제품의 다양화와 신제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신제품의 판매승인 거부, 판매시기 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그러나 생산능률의 향상, 유통의 합리화, 부품의 호환성 증대, 조약품 배제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활동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은 위반행위가 아니다.

〈적용사례〉

(주)동아출판사 등 6개 출판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검증합격이 발표된 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 교과서의 자습서 및 카세트 테이프의 생산·판매에 관한 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후 동 약정서에 따라 영어교재의 규격 및 체제를 통일하였고 가격도 5,000원으로 동일하게 시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심결서 제90-62호).

(7) 회사설립 공동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로서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이와같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격이나 물량 그리고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내용 중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지만, 6개 시멘트 회사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시멘트 수송 회사를 1987년에 해체하도록 한 바 있는데 정부의 허가없이 이러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이며, 공동행위 유형중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유형의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나 사업자간 합의와 경쟁제한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

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횟수, 광고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케 하는 행위

바.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는 공정거래법 제12장 적용제외 규정(제58조~제61조)에 의한 일반적 적용제외와 법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방식에 의한 개별적 적용제외가 있다. 일반적 적용제외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무체재산권 행사행위(법 제59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60조)가 있다. 인가에 의한 개별적 적용제외로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4조~제28조).

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외국의 입법 예

(1) 미국

가) 미국의 독점금지법 체계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1890년), 클레이튼법(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1936년)의 세 가지 법률이 기본법이며 1936년 당시의 클레이튼

법률명	특징 및 역할	관련규정	카르텔 관련사항 등
① 셔먼법 (1890년)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일반원칙 선언	제1조(거래제한) 제2조(독점화)	거래제한 카르텔, 위법 독점화를 위한 공모는 위법임.
② 클레이튼법 (1914년)	경쟁제한적이거나 독점화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행위유형을 금지하는 것으로 셔먼법을 보완하는 역할	제2조(가격차별) 제3조(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 거래) 제7조(주식 및 자산취득) 제8조(임원겸임)	Robinson-Patman법 Hart-Scott-Rodino법
③ 연방거래위원회법 (1936년)	규제범위는 일반적으로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보다 넓으며 불공정한 거래방법 또는 기만적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	—	—

법 제2조를 개정한 Robinson-Patman법, 1976년 클레이튼법 제7조(주식 및 자산의 취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Hart-Scott-Rodino법(클레이튼법 제7조A에 의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법률의 실체적 규정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체계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이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가 미국 독점금지법의 핵심으로 독점금지법상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클레이튼법은 특정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방법 또는 기만적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카르텔에 대한 규제

<법적근거>

카르텔에 대한 규제는 셔먼법에 근거하고 있는 데 셔먼법 제1조는 “주간(州間) 혹은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행위는 위법이다. 여기서 위법으로 선언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합 또는 공모한 자는 중죄를 범한 것이 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법인의 경우 100만불 이하의 벌금, 자연인은 1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카르텔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자간의 수직적 제한이건 수평적 제한이건 간에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미국의 카르텔규제의 특색은 “당연위법의 원칙”인데, 셔먼법에서는 카르텔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당연위법”이란 가격협약 또는 시장분할협약의 존재가 인정되면 시장 점유율, 협정의 목적,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위법이 되는 것이다. 당연위법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창출되거나 경제력의 집합적 행사는 언제나 경제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둘째, 그 특성상 관행의 법적 평가에 대하여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다.

세째, 협약의 목적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필요로 할 경우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법적판단이 어렵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소송 경제상의 이유도 있다.

<합리성의 원칙>

가격협정 및 시장분할 협정과 관련하여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사업체(Joint Venture)의 법리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형성된 경쟁사업자간의 공동사업체는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경쟁체인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이것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둘째, 경쟁사업자간에 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 활동에 대하여는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도 참가자의 시장점유율, 참가목적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정보교환활동이 가격의 횡일화라는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된다.

<카르텔 규제의 강화>

1970년대 후반 당시 악성 인플레이션이 가격협정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 법무성은 카르텔의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사업체의 법리는 현저하게 그 적용범위를 축소당하

게 되었다. 가격에 관한 정보교환은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원칙은 유지되었으나, 당연위법으로 되는 가격협정이 유력한 상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바, 그 규제강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적극적 적발 및 주모자에 대한 형사소추 등이 강화되었다.

– 종래 요금협정이 인정되었던 분야의 적용제외 철폐 등으로 독점금지법 적용대상 산업이 금융업, 운수업과 자연독점이론이 인정되던 전기통신업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변호사, 의사 등 전통적으로 사적자치에 의한 자율규제가 용인되어 왔던 전문자유업에 대하여도 카르텔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 과점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도 확대(가격협정의 주인시 다소 완화된 입증정도 단, 형사소추 시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함)되고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Boycott)에 대하여는 참가자의 시장지배력, 목적, 실효성 등이 실질적으로 감안되어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제1유형은 동업자가 거래단계에서 상방 또는 하방에 있는 거래 사업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거절을 시켜 특정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이다. 이때 특정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게 할 만큼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위법성 판단기준이 된다.

– 제2유형은 동업자 또는 동업자 단체가 당해 업계에서 사업 수행상 불가결한 공동이용 시설 또는 공동구입 조직을 보유하거나 정보제공 등의 공동활동을 하는 경우에 특정 경쟁 사업자에게 그 편익제공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이때 공동의 거래

거절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 제3유형은 동업자 또는 동업자 단체가 특정한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이때 공동의 거래 거절의 대상은 동일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의 거래 상대이며, 위법성 판단에서 참가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연위법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

1940~70년대까지 판례법상 가격협정 및 시장분할 협정 또는 협약은 공동사업체 법리 또는 가격관련 정보교환에 대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당연위법의 원칙”이 확립·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경제분석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대두됨에 따라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에 따라 판례법이 변화되고 있다. 즉, Broadcast Music 사건(대법원판결, 1979), Maricopa County의 Medical Society 사건(대법원판결, 1982), Ncaa 사건(대법원판결, 1984)의 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 가격협정에 해당하는 협정 또는 협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매우 높은 경제적 효율을 실현한다고 일견 보이는 경우나, 또한 경쟁을 요구하지 않는 특수업계에서 형성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는 판례가 거의 확립되었다.

(2) 일본

가) 카르텔에 대한 규제

일본의 독점금지법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은 없으나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독점법 2조6항 및 3조), 국제 카르텔 참가금지(동법 6조), 사업자 단체의 활동규제(동법 8조) 등에서 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카르텔 규제의 특색은 합리성의 원칙 적용과 과점산업에서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취인위원회가 가격을 인상한 기업으

로부터 가격인상 이유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감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가격인상 이유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법 18조의2).

① 연간공급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일 것.

②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초과하는 기업들일 것.

③ 3개월 이내에 주된 기업들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졌을 것.

④ 가격 인상액 또는 가격 인상률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것일 것.

나)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부당한 거래제한은 독금법 3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 정의에 대하여는 독금법 2조6항에서 그 주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거래제한 즉, 카르텔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사업자간에 의사연락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상호구속 또는 공동수행하거나,

둘째,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것.

세째,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표 3) 독금법 제2조6항 요약

관련조문	조문 내용
① 제2조6항	이 법률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제한이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기타 어떤 명의(名義)를 가지고 있든지간에 타사업자와 공동하여 대가를 결정, 유지, 인상하거나 또는 수량, 기술, 제품, 설비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상호 그 사업 활동을 구속』 또는 수행함으로써『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3조	사업자는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다) 적용제외 카르텔

일본은 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용제외 카르텔”이라 한다. 적용제외 카르텔은 독금법에서 ①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위(독금법 24조의3), ② 기업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동법 24조의4)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는 중소기업 카르텔, 수출 카르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3.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가. 머리말

앞에서 설명한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구성사업자의 단합행위인데 비하여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란 협회 등 사업자 단체 자신이 구성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이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법 제 26조).

나. 사업자단체의 의의 및 주요내용

(1) 사업자단체의 의의

사업자 단체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법 제2조 제1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단체로서 그 명칭, 조직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4호).

이들 단체는 법인의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비법인의 형태도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조합·○○협회·○○진흥회 등의 업계단체나, ○○연합회·○○중앙회 등이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사업자 단체의 활동과 공정거래

동업자들은 단체를 통하여 시황, 가격유지, 공급량 제한,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 바, 사업자 단체가 카르텔을 선도하거나 구성원 등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자유로운 자주적 활동

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26조제3항).

'86. 6. 26제정한 '사업자 단체 활동지침'이 이에 해당한다. 동 지침은 그동안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사업자 단체의 설립신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사업자 단체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5조).

○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신고를 받는 것은 정관이나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사업자 단체에 대해 사업활동이나 그 사업내용을 간섭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법 제26조 제1항 각호).

(1) 가격 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가 가격결정, 수량 기타 공동행위를 행하는 경우(법 제26조제1항 제1호)로서 이미 공동행위의 유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동 행위의 효력 및 인가절차 등은 공동행위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다(법 26조 제2항).

〈적용사례〉

한국제분공업협회는 1985. 3. 27자로 구성 사업자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밀가루 판매가격 덤핑을 지양하고, 대리점 및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판매가격을 중력 1등급을 기준으로 22kg 포대당 4,850원 수준으로 1985. 4. 1부터 공동으

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심결서 제85-43호).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유지하고, 장래 신규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일반적 사례는 사업자 단체에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점포간의 거리를 정한다든지, 영업시설의 형태를 특정짓는 등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단체가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3)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인 설비, 제품, 가격, 기술, 수량, 거래방법, 영업방법 등에 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이러한 제한에는 광고활동의 제한, 영업일·영업시간의 제한, 영업의 종류·내용·방법의 제한, 구성원간의 거래처 침범금지, 점포·영업소의 신설·이전제한, 원재료의 독점구입·배분 등이 대표적이다.

〈적용사례〉

경상북도 주류도매업협회는 '94. 3. 8 동대구호텔 회의실에서 제4기 정기총회를 열고 주류 유통거래 정상화를 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들의 결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94. 5. 26 협회 사무실에서 제32차 이사회를 열어 ① 신규 도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배제하며, ② 신규 도매 업자와 거래를 약정한 주류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구입을 일체 거부하기로 "우리들의 결의"를 일부 수정하여 결의, 이를 전회원사에 실행토록 통보한 사실이 있어 법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4호를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심결서 제94-281호).

(4)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법 제23조 해당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법 제2조 제6호, 제29조)를 하도록 하여 거래 단체별로 시장가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5) 사업자 단체의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를 대신하여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이다(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라.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의 시정 실적

1) 사업자 단체 설립신고 현황

사업자 단체는 1996년말 현재 설립 신고된 6,185 개 단체를 설립 근거별로 분류하면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4,215개로 전체의 6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에 기초한 단체가 1,966개, 기타 이러한 법률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들이 임의로 설립한 단체가 4개가 있다. 사업자 단체 총 6,185단체 중 중앙회는 623 개 단체, 시도지부(회)는 1,515개 단체이며 시군지회(부)가 4,04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의 시정실적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96년말까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4백16건 중 경제제한 행위가 2백60 건으로 가장 많고,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이 77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가격결정에 관한 행위였다.

(표 4)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 및 업종별 현황

(96년말 현재, 개)

업종	설립근거			민 법	임의단체	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기 타 특별법	계			
제조업	467	610	1,077	280	—	1,357
전기·가스업	1	—	1	1	—	2
건설업	—	98	98	21	—	1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6	1,018	1,224	677	1	1,902
운수·창고업	—	138	138	42	2	18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24	443	467	333	—	800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	1,208	1,210	612	1	1,823
계	700	3,515	4,215	1,966	4	6,185

(표 5)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위반행위

(96년말 현재, 경고 이상, 건)

구 분	'81~'92	'93	'94	'95	'96	계
경제제한행위	92	49	43	30	46	260
사업자수제한행위	22	3	4	1	1	31
사업내용·활동제한행위	49	3	5	5	15	77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	33	3	4	4	4	48
가격유지행위						
계	196	58	56	40	66	416

(주) : 1개 사건당 위반유형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음. '81~'92년까지는 시정권고 이상, 93년 이후는 경고 이상임.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법(私法)적 효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 효과가 부인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각각 부과하거나 혹은 병과할 수 있고, 법위반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나.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동행위는 참여한 사업자간에 어느 정도 상호구속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공권력의 개입은 오히려 이러한 상호구속을 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내려 상호 구속성을 제거하면 시장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거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업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명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시장의 자동조절작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행위의 실행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2조, 1996. 12. 30 개정).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1996. 12. 30 개정 신설).

종전에는 사업자 단체(협회자신)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1996년 12월 30자 개정법에서는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단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다(법 제28조).

이밖에 구성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법 제23조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법 제71조).

5. 맷는 말

공정거래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경쟁원리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경제 기본법이다.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후 제6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경제현상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계속 법을 고쳐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나 수많은 단체들이 아직도 공정거래법의 취지나 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정거래법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법이다.

특히, 외국에 대한 제도도 참고로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공정거래법이 많은 사람에게 익히고 알려져서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풍토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위반유형에서는 심결사례를 일부 소개하였으나 더 자세한 사례들은 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심결집을 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